

◎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-135호

“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”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19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취지

- 오디오·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·통신·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(국제기준 부합화)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검사항목 현행화

2. 주요 내용

1) 대상: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

2) 주요 제정 내용

- 오디오·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·통신·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일치화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)

3. 의견제출

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- 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- 라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 소: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
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전화번호: 043-870-5445 (FAX: 043-870-5676)
- 전자우편: chinhc@korea.kr